

용역계약서

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.

■ 당사자

발주처	성명/회사명		생년월일/사업자번호	
	주소		연락처	
용역인(수급인)	성명/회사명		생년월일/사업자번호	
	주소		연락처	

■ 계약 내용

용역의 명칭		계약기간	
용역기간		용역대금	
지급방법		검수기한	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발주처가 용역인에게 위 용역의 수행을 의뢰하고, 용역인이 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역의 범위)

용역인은 위 용역의 명칭과 범위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한다.

용역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은 별도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3 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의 용역기간은 위 계약기간에 따른다.

용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,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4 조 (용역대금 및 지급방법)

발주처는 용역인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한다.

용역대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: (예시) 계약체결 시 30%, 중간검수 시 40%, 최종검수·납품 시 30%

지급은 용역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.

제 5 조 (검수 및 인수)

발주처는 용역 완료 후 기한 내에 검수를 수행하고, 적합한 경우 인수한다.

부적합한 경우 용역인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용역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한다.

제 6 조 (지식재산권 귀속)

본 용역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(저작권, 특허권, 상표권 등)은 발주처에 귀속한다.

다만 용역인이 기존에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용역인에게 귀속한다.

제 7 조 (비밀유지)

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, 영업비밀 등을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
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3 년간 계속된다.

제 8 조 (계약의 해제·해지)

발주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납부 용역대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용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한다.

제 9 조 (손해배상)

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한다.

제 10 조 (분쟁해결 및 관할)

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발주처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은 먼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.

20 년 월 일

발주처 : (서명 또는 인)

용역인(수급인) : (서명 또는 인)

※ 본 계약은 참고용이며 당사자의 특정 상황에 맞게 조정·수정하여야 합니다. 큰 규모의 용역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